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921호 2023. 7. 19.(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96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159호 공인 등록 공고 ..... 3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3-33호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

<b>회 략</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9.

거창군수

###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5길 54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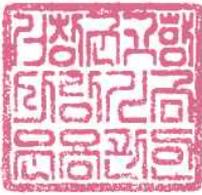
## 공인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9.

## 거창군수

1. 등록사유 :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등록공인의 최고 사용 연월일 : 2023. 7. 19.
4.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고향사랑기금운용관인	2cm×2cm	
거창군고향사랑기금출납원인	1.8cm×1.8cm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3-33호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4일

거창군수

###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 2022.6.16.)되어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을 신설함(안 제8조·별표)
- 나. 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신설함(안 제16조)

####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체육시설사업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 2023. 8. 4.(금) 18:00까지
-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바. 의견제출하는 곳

- 1) 주소: (50126)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 2) 전화 055-940-8721, 팩스 055-940-8729, 이메일: [la1007@korea.kr](mailto:la1007@korea.kr)

4.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① 군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별표 지원분야란 중 장애인활동 지원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경비 지원대상 사업(제8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li> <li>○ 수준별·종목별 지정스포츠클럽 대회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li> <li>○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8조(경비의 지원)</b>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li> <li>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li> <li>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li> <li>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li> <li>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li> <li>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li>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li> <li>8. 전문체육 활동 지원</li> <li>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b>제8조(경비의 지원)</b>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li> <li>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li> <li>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li> <li>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li> <li>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li> <li>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li>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li> <li>8. 전문체육 활동 지원</li> <li>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li> <li>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li> </ol> <p>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p> <p><b>제16조(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b></p> <p>① 군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700호, 2022. 6. 15., 제정]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시행 2019. 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지원)** ① 거창군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주사무소의 소재와 회원의 주소가 거창군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한 차례 이상 보고를 하게 하고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부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